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(농협)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명칭과 위원회의 위원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.

4. 주요 골자

- 농촌소득개발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중 "농어촌개발 국장"을 "농정국장"으로, "농림수산국장"은 삭제하고 "농협도지회장"을 "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"으로 "충북원예협동조합장"을 "충북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"으로 명칭 변경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"농어촌개발과장"을 간사로 한다를 "농업정책과장"으로 명칭 변경

5. 검토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,

충청북도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2021호 (1994. 5. 16)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개정 (1995. 2. 1)에 따라,

조례 제5조의 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 및 간사에 대한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제5조 제1항 제2호중 "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"을 농정국장으로, "농협도지회장"을 "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"으로,

"충북원에협동조합장"을 "충북사과원에농업협동조합장"으로 하며, 제4호중 "농어촌개발과장"을 "농업정책과장"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의 직제 개편에 따라 직제 명칭과 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6. 칙 부

○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